

제 2 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 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 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모든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 2.3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절 관세 철폐

제 2.4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을 대체하고, 제18장(제도

규정)과 양 당사국 각각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 발효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6.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이를 검토 중인 당사국은 새로운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실행가능한 한 이를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자국의 의도를 공표한다.¹

제3절 특별 제도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경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행사를 포함하여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¹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인쇄된 형식으로 공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 거래 ·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 임대,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아니할 것
- 다. 그 상품이 수입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 관세 협약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는 담보를 수반할 것
-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출국 이전,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 될 것, 그리고
-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국내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허가된 출국지점 외의 다른 통관 허가된 출국지점을 통하여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당사국에게 제시하면 그 일시 반입된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7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담배 제품을 예외로 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택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은 당사국이 제2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5.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식료품 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식료품 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나.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공표한다. 그리고
 - 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2.9조 비관세조치

1. 제17장(투명성)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제2.8조제1항에서 허용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제2.15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한 비관세조치를 확인할 때 그 조치를 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그러한 조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이후에만, 그 비관세조치를 검토한다.

3. 상품무역위원회는 제2항에서 언급된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교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은 검토 또는 조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제출된다.

제2.10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²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웹사이트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용된 기준에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허가의 부여와 거부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답변한다. 수입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기준의 공표를 고려한다.

²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6. 당사국이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관련하여 수입허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한다.

제2.11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부과금, 형식 및 요건이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2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도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5절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제2.13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각 당사국은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1994년도 GATT 제13조 및 그 주해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 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며,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3. 수입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기업이나 인도 그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에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4.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그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국경에서의 선착순 운영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10일 이내에 관세율할당이 소진되었음을 공표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을 적시하고, 그 기관 또는 기관들의 어떠한 변경이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6. 각 당사국은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 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
7. 부록 2-가-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그 부록에 설정된 전체 퀘터 물량을 첫 해 동안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연도의 첫 번째 영업일에 시작하여 퀘터 신청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8. 어느 한쪽 당사국이 국경에서의 선착순 운영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당국이 제4항에 따라 관세율할당이 소진되었음을 알리기 전에 운송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퀘터 외 물량 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상품은 해당 퀘터 연도 동안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송 중인 제품은 차기 연도의 관세율할당 물량으로 산입된다.

제6절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2.14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 2.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그 농산물의 어떠한 연도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더 높은 수입관세 형태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부속서 2-나에 규정된 관세율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 또는

다.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 당사국은 이 절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 조치를 적용한 연도의 말까지만 유지한다.

5. 당사국은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조치를 적용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당사국과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전에 이용 가능한 잔여 수입 물량을 다른 쪽 당사국 및 무역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6.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 물량은 차기 연도에서의 제1항 규정의 발동 목적상 차기 연도 동안 해당 상품의 수입 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다.

7. 이 조의 이행과 운영은 제2.15조에 따라 설립된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7절 제도 규정

제2.15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또는 제7장(무역 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 나. 제2항에서 언급된 장의 이행을 검토하는 것
- 다.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다루는 것, 그리고
- 라.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서 고려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제2.16조 접촉선 및 협의

1.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그 조치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정보 및 협의에 대한 그러한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